[한화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2024-175호 [심의일 : 2024.04.01.]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1 신용거래 개요

○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연속재매매)이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투자사례(2) 참조)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4.투자사례(1)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주소·사무소 등 연락장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4.투자사례 참고),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유통금융종목(증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객의 정보는 증권금융회사에 제공되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사례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 만원,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매입,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500원	8,500,000원	142%	
D+1일	7,500원	7,500,000원	125%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7,500원	7,500,000원	125%	추가담보 미납(90만원 담보부족)
D+2일 -담보부족발생일 다음영업일	임의처분 실행			

(1)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3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629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629주)이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03만원(629주×6,4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90만원)의 4.5배 수준**

(2) 연속 담보부족인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5,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40만원(1,000주×6,400원)으로 **투자원금(400만원)의 상당부분(90%)에 달하는 손실(360만원) 기록**

○ 융자 이자 계산 사례(융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비고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2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667,397원	1억 X 8.4% X 29일/365
3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722,466원	(1억 X 8.9% X 57일/365) - 667,397
상환일	상환이자	412,877원	(1억 X 9.4% X 70일/365) - 1,389,863
	합계	1,802,740원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이자 징수 시기 : (정기) 매월 첫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징수
(상환)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 기간에 대해 이자 징수

* 신용거래 융자 이자 적용방식의 종류
-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단일법** : 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5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신용거래보증금율</td><td>종목군에 따라 45% 또는 50% (단, 신용대주: 대용 100%)</td></tr>
<tr><td>융자한도</td><td>동일고객 총 20 억원내 (온라인의 경우 총 10 억원)</td></tr>
<tr><td>대주한도</td><td>투자경험 등에 따라 한도상이 (3 천만원, 7 천만원, 3 억원)</td></tr>
<tr><td>담보유지비율</td><td>140%이상 (당일종가로 평가하며, 유형별 고객별로 차등적용)</td></tr>
<tr><td>상환 기간</td><td>신용융자: 90 일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신용대주: 90 일 (연장 불가)
*신용만기연장 조건 : 고객의 만기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고객별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신용대용형의 경우 원담보비율 140%이상)이고, 해당종목의 회사한도가 있으며, 21 년 11 월 이후 매수분, 신용융자 가능 종목 (단,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신규 및 연장 불가)</td></tr>
<tr><td>추가납부기간</td><td>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td></tr>
<tr><td>신용거래융자이자율</td><td>
<table>
<tr><th rowspan="2">융자 기간</th><th rowspan="2">적용금리</th><th colspan="2">기준금리 (CD91일물) / 가산금리</th></tr>
<tr><th>기준금리 (CD91일물)</th><th>가산금리</th></tr>
<tr><td>1~7일</td><td>6.9%</td><td>3.65%</td><td>3.25%</td></tr>
<tr><td>8~15일</td><td>7.9%</td><td>3.65%</td><td>4.25%</td></tr>
<tr><td>16~30일</td><td>8.4%</td><td>3.65%</td><td>4.75%</td></tr>
<tr><td>31~60일</td><td>8.9%</td><td>3.65%</td><td>5.25%</td></tr>
<tr><td>61일 이상</td><td>9.4%</td><td>3.65%</td><td>5.75%</td></tr>
</table>
* 연체시: 최대 연 11%
기준금리 : CD수익률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td></tr>
<tr><td>신용거래이자 적용방식</td><td>소급법 : [표 3]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 예시 참조</td></tr>
<tr><td>신용거래융자 가능종목</td><td>상장종목 (관리 ·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td></tr>
<tr><td>상환방법</td><td>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td></tr>
</table>

※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금융투자협회(2003-9423)**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용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직원 확인]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20 년 월 일 한화투자증권 지점 직원명: (서명 또는 인)

신용거래(융자,대주)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 · 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H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 · 매매수수료 · 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조건 충족 시 신용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 종목의 회사한도, 고객의 투자성향 및 신용상태, 담보예탁증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신용거래 매수	10,000원	10,000,000원	166%	–
D일	7,500원	7,500,000원	125%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90만원 담보부족)
D+1일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900,000}{(6,380\times1.4)-7,500}$ = 629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대출금

☞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3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29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629주)이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03만원(629주×6,4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90만원)의 4.5배 수준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wm.com〉고객센터〉소비자보호광장〉전자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5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8

3. 기타 주요사항 ---------- 9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대주를 받아 수도 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한국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①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신용거래보증금률 :

구분		기본형	안정형	신용대용형
융자	40%종목군	45%(현금 35%, 대용10%)	45% (현금45%)	45% (대용45%)
	50%종목군	50%(현금 40%, 대용10%)	50% (현금50%)	50% (대용50%)
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유형별 / 신용공여금액별로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200%로 차등적용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회사는 원담보 종목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금을 징수하는 순서는 ‘대용증권 〉 현금(원화)’의 순으로 징수하며, 해외주식 담보대출을 보유한 계좌에 한해 ‘대용증권 〉 해외주식 중 회사가 정한 현금주식 〉 현금(원화)’순으로 징수합니다.

– 추가담보금 징수시, 대용증권은 전일종가로 평가한 금액을 사용하고 해외 현금주식은 최근일 종가와 최초고시환율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의 50%만 사용하며, 추가담보금이 징수된 경우 출금,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추가담보납부기간(담보비율에 따라 다르며 요구일로부터 1~2일)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1%)를 지급합니다.

신용거래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등과 종목군별 신용거래한도는 후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담보평가방법

– 회사는 원담보 및 부담보 종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담보평가를 합니다.

①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거래정지 종목	거래소 대용가 ‘0’인 종목 → ‘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가 ‘0’이 아닌경우 →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
관리 /정리매매	‘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 없음)
투자위험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경고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고] 거래소 대용가가 ‘0’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
-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정지된 종목
- 기타 거래소가 대용가를 ‘0’으로 정하는 경우

4) 신용거래대상종목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대주의 경우 KOSPI200, KOSDAQ150 한정)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수도전예납조치를 취했을 때

· 회사가 정한 종목

5) 상환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 전일(휴장일 제외)까지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신청(4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한 방법)

ㄱ.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자동 현금상환(원화) → 미상환융자금 종목

ㄴ. 담보부족 발생계좌

– 자동현금상환(원화) → 신용융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국내주식담보대출 → 해외주식담보대출 → 채권담보대출 → ELS 담보대출

(주식임의처분 순서 : 융자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ㄷ. 미상환융자금 또는 담보부족으로 인해 처분된 종목의 매도대금이 상환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제일에 현금미수(원화) 처리하며,
현금미수 처리시 현금미수 임의상환 처분 기준(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따름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⑥ 임의상환 처분순서의 변경은 처분일 오전 8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감자 등의 제권리가 발생되거나 담보교체가 있는 경우, 요청한 종목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주가 하락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입니다.(1,000÷4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고객의 정보는 증권금융회사로 제공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 평가관련 유의사항

1) 고객은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신용공여한도, 담보유지비율, 신용 보증금율, 선물옵션 매매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신용공여의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고객님께서는 금소법 제 21조의2에 따라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방법

고객님께서 향후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에 요청하시거나, 금융권 공동 연락중지 청구시스템(두낫콜)을 통해 행사 가능합니다.

□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1) 현금배당

① 신용매수 고객(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당해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당해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고객)에게 당해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② 신용대주고객(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당해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당해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당해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징수합니다

2) 주식배당

① 신용매수고객에게 당해 주권을 인도합니다

② 회사가 당해 주권을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징수합니다

- 배당 주식의 권리가격 = 대주수량×배당률 x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3) 배당금의수수일

① 당해 종목의 발행회사가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교부를 개시한날 이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 주식에 대하여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 하는경우 당해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상장된 날의다음날에 행합니다.

③ 회사는 신용매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징수하게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 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 환산액을 신용매도 고객으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매수 고객으로부터 납입금을 징수한 후 신주권을 인도하며, 신용매도 고객으로부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징수합니다

- 신주인수권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 주식종가 – 거래소권리락기준가격 X 대주수량, 단수주

2) 무상증자

신용매수 고객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며, 신용매도 고객으로부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징수합니다.

- 신주인수권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 주식종가 – 거래소권리락기준가격 X 대주수량, 단수주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금액은 당해 종목의 권리락당일로부터 2일째 되는날(거래소 휴장일은 제외)로합니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금액만큼 기타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약관 ·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출

ㅇ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일반 대출기준과 별도로 심사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 및 계열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등기임원 포함)은 증권담보대출의 약정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1] 신용거래보증금률 등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신용거래보증금률</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본형</th><th>안정형</th><th>신용대용형</th></tr>
<tr><td rowspan="2">융자</td><td>40%
종목군</td><td>45%
(현금 35%,
대용10%)</td><td>45%
(현금45%)</td><td>45%
(대용45%)</td></tr>
<tr><td>50%
종목군</td><td>50%
현금 40%,
대용10%)</td><td>50%
(현금50%)</td><td>50%
(대용50%)</td></tr>
<tr><td colspan="2">대주</td><td colspan="3">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td></tr>
</table>
</td></tr>
<tr><td>신용공여 한도</td><td>동일고객 총 20억원 (온라인의 경우 총 10억원)
단, 대주한도는 투자경험 등에 따라 한도상이
– 초기투자자 : 3,000만원
– 경험투자자 : 7,000만원(최근 2년내 5회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
– 성숙투자자 : 3억(최근 2년이상 5회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
– 전문투자자 : 3억</td></tr>
<tr><td>담보유지비율</td><td>140% 이상 (당일종가로 평가)</td></tr>
<tr><td>상환기간</td><td>신용융자: 90일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신용대주: 90일 (만기연장 불가)
*신용만기연장 조건 : 고객의 만기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고객별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신용대용형의 경우 원담보비율 140%이상)이고, 21년 11월 이후 매수분, 해당종목이 신용융자 가능종목 (단,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신규 및 연장 불가)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
: 영업일 기준, 영업점 마감 시간인 17:00</td></tr>
<tr><td>추가납부기간</td><td>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담보비율 130%미만) 또는 다음 영업일(담보비율 130%이상~140%미만)</td></tr>
<tr><td>임의상환정리</td><td>담보부족 발생일 기준 익영업일(130%미만의 경우)
담보부족 발생일 기준 익익영업일(130%이상의 경우)</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신용공여이자율 (연환산)</td><td>
<table>
<tr><th rowspan="2">융자 기간</th><th rowspan="2">적용금리</th><th colspan="2">기준금리
(CD91일물)</th><th>가산금리</th></tr>
<tr><td>1~7일</td><td>6.9%</td><td>3.65%</td><td>3.25%</td></tr>
<tr><td>8~15일</td><td>7.9%</td><td>3.65%</td><td>4.25%</td></tr>
<tr><td>16~30일</td><td>8.4%</td><td>3.65%</td><td>4.75%</td></tr>
<tr><td>31~60일</td><td>8.9%</td><td>3.65%</td><td>5.25%</td></tr>
<tr><td>61일 이상</td><td>9.4%</td><td>3.65%</td><td>5.75%</td></tr>
</table>
기준금리 : CD수익률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td></tr>
<tr><td>대주이자율 (연환산)</td><td>KOSPI200 : 3%
KOSDAQ150 : 5%
단. 당일 상환의 경우 1일치 이자 부과</td></tr>
<tr><td>신용공여이자징수일</td><td>매월 첫 영업일</td></tr>
<tr><td>신용이자 적용방식</td><td>소급법 : [표 3]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 예시 참조</td></tr>
<tr><td>신용거래 가능종목</td><td>상장종목 (관리·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종목은 제외)</td></tr>
<tr><td>상환방법</td><td>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 시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td></tr>
<tr><td>대주매각대금이용료</td><td>연 0.1%</td></tr>
<tr><td>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td><td>매월 첫 영업일</td></tr>
</table>

※ 연체이자율(미상환융자금 및 신용이자미납 등)은 실제 융자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융자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됩니다.

가.신용이자 미납금 최초발생시엔 미납이자분에 대해 연 11% 적용

나.동일융자건에 대해 전월미납분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신용이자미납금 산정시 원금에 대해 연 11% 연체이율 적용

※ 유통금융매수증권의 경우,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표2]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

종목군	신용 공여 한도
A군	20억원
B군	10억원
C군	5억원
D군	2억원
E군	1억원

※ 종목군은 당사가 개별 주식의 위험도 등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용공여 한도는 매입/대출 시 한도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변경된 종목군에 따라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 및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3]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 신용 이자율 적용방식의 종류 : 당사는 소급법을 적용 함

적용방식	내용
체차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소급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단일법	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신용거래융자이자의 계산

※ 융자 이자 계산 사례(융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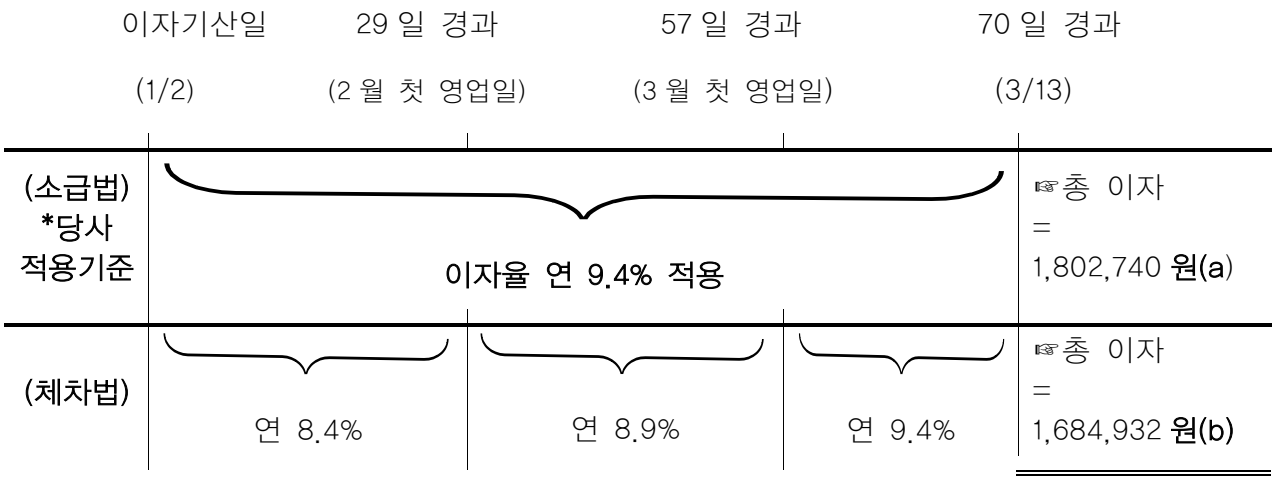

▶117,808 원
차이(a-b)

비고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2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667,397원	1억 X 8.4% X 29일/365
3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722,466원	(1억 X 8.9% X 57일/365) - 667,397
상환일	상환이자	412,877원	(1억 X 9.4% X 70일/365) - 1,389,863
	합계	1,802,740원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융자 기간	적용금리		
		기준금리 (CD91일물)	가산금리
1~7일	6.9%	3.65%	3.25%
8~15일	7.9%	3.65%	4.25%
16~30일	8.4%	3.65%	4.75%
31~60일	8.9%	3.65%	5.25%
61일 이상	9.4%	3.65%	5.75%

※ 이자 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습니다.

ㅁ 담보비율 계산식

신용주식평가금 + 담보증권평가금 + 대주담보금 + 부담보증권평가금 + 권리대용금 + 예수금 - 제미수금	X 100
담보대출금액 + 신용융자금액 + (대주주수 × 기준가)	

※ 담보증권평가금: 주식담보평가금+채권담보평가금+ELS 담보평가금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아래 주요내용을 차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❷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대주증권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담보증권 평가하락 등)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❸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❹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CD수익률의 내용,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wm.com〉고객센터〉소비자보호광장〉전자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Ⅰ.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Ⅱ.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Ⅲ.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Ⅳ.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Ⅴ.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Ⅵ.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Ⅶ.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6)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3개월 은행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등급) ± 스프레드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기타 대체금리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금리 예) COFIX, CP(A1, 91일), KORIBOR, KOFR 등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추가 필요 기재 또는 관리사항

CD수익률 사용기관은 상기 **Ⅰ~Ⅶ의 기재사항**과 함께 CD수익률 **산출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의 **CD수익률 설명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이력도 기재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록] 신용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 신용거래시 융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융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 ~ 10.24까지)인 경우 <예시> ~7일까지 | 7% | ~30일까지 | 8% | ~90일까지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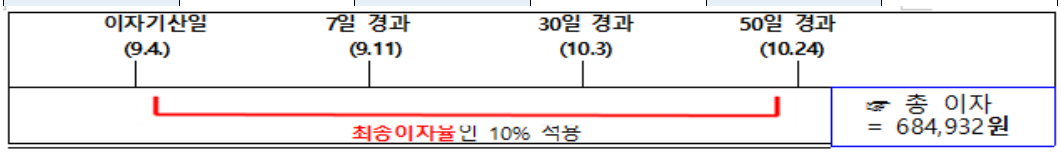
체차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 ~ 10.24까지)인 경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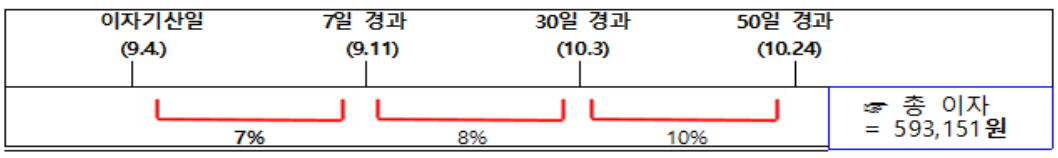

용어	설명
단일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 ~ 10.24까지)인 경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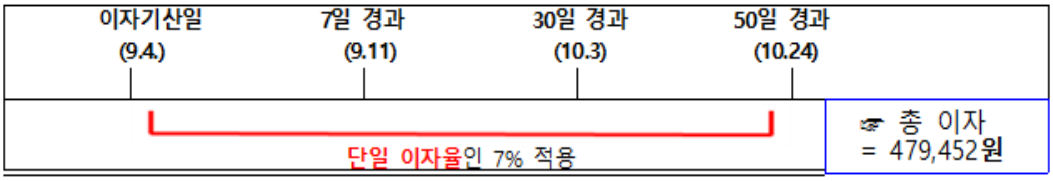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